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6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 의 자 : 문진석 · 윤종균 · 안태준
복기왕 · 이재관 · 손명수
김교홍 · 최혁진 · 맹성규
한준호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3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8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본 사업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일반정비 사업으로 추진 곤란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존재하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일몰을 폐지하고 사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

을 제고하는 한편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 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개정).
- 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에 검인 절차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활용토록 함(안 제40조의7 개정).
- 다.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추가함(안 제40조의8 개정).
- 라.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함(안 제40조의9 개정).
- 마.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 후보지 선정일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 전에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40조의10 개정).
- 바.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의 취소,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삭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사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3조제4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을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으로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심의 또한 거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7제3항제2호 중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8항에 따른 동의를 위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7제10항(중전의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40조의8제4항제2호 중 “협의를”을 “협의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40조의9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0조의10제5항제3호 중 “상속 또는 이혼을”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후보지 선정일을”을 “후보지 선정일 또는 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일 전에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날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는 경우

제40조의12제2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를 “주민협의체”로 한다.

제40조의13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등소유자”를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명령을”을 “명령 등의 조치를”로 한다.

② 복합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합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

민대표회의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7, 제40조의9,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 ①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복합사업부

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 ----- ----- -- <u>사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한한다)</u>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 <u>환경영향평가법</u> 」 제42조에 따른 시·도조례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u>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u><신설></u>	10. 「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 10. (생략)	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1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생략)

⑦ ~ ⑨ (생략)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② (생략)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1. ~ 8. (생략)

_____.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
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
적위원 계산

3.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

----- . 이 경
우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심
의 또한 거친 것으로 본다.

1. ~ 8. (현행과 같음)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략)

④ ~ ⑦ (생략)

<신설>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

<신 설>

-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

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8항에 따른 동의를 위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⑩ -----

-----.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요건을 갖

<u>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u> 2.·3. (생략) <u>⑨·⑩</u> (생략)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생략)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u>추지 못하는 경우</u> 2.·3. (현행과 같음) <u>⑪·⑫</u>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u>협</u>의	----- ----- ----- ----- ----- <u>협</u>의,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 40. (생략)	3. ~ 40.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생략)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	⑤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present.

1. · 2. (현행과 같음)

3. -----
----- 상
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
--

⑥ _____

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1. ~ 3. (생략)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
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
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
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 바. (생략)

5. (생략)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후보지 선
정일 또는 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
일 전에 따로 정하여 공고하
는 날을 ---.

가. ~ 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⑦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⑧ ~ ⑫ (생략)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민협의체-----

-----.

-----.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

----- 위한 -----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민협의체 구성원-----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도

③・④ (생략)

제55조(감독) ① (생략)

<신설>

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5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복합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합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

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명령 등의 조치를 -----
-----.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제55조제1항 및 제2항-----
-----.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삭 제>

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
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제34조 및 제40조의
7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
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
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
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0
조의7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을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삭 제>

<u>적용한다.</u>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u> <u>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u> <u>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u> <u>다.</u>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	--